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포구속시 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확인 및 보호조치 의뢰〉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212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체포·구속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관련 현행 규정	4
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보호조치 규정	4
나.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규정	6
3.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그 부모를 둔 아동은 가족 해체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와 그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포 및 구속·구인 등 부모와 분리되는 즉시 아동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특히 시장·군수·구청장 이외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그 자녀가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

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자녀가 있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①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피의자가 체포·구속될 경우 자녀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②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45조의11 신설).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5조의11(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 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의 특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와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따라 그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u>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피의자 체포·구속에 따라 피의자의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u> ④ <u>제2항에 따른 자료 협조의 절차와 방식,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의 절차와 방식, 그 밖에 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보호조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2. 체포·구속 피의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관련 현행 규정

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보호조치 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보호대상아동은 약 2,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학대·부모빈곤·실직 등 사유가 약 1,7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2] 보호조치 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유형 계	4,047	4,120	3,437	2,289	2,054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2,865	3,006	2,661	1,953	1,692
비행, 가출, 부랑	473	468	293	11	14
미혼부모, 혼외자	464	466	366	252	259
유기	237	169	117	73	88
미아	8	11	0	0	1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같은 법 제15조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등에는 ①보호대상아동 또는 보호자 상담·지도(제1항제1호), ②민법상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조치(제2호), ③위탁보호(제3호), ④아동복지시설 입소(제4호), ⑤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제5호), ⑥입양 등에 의한 보호(제6호) 등의

1)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는 제1호 및 제2호 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함(제15조제2항).

나.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53조의2²⁾에 따르면,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수용자가 보호조치 의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법무부령인 「수용자 수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및 제66조³⁾는 지방교정청 단위로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두고, 수용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65조(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안내) ① 소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

자의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3.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보호할 자녀가 있는지 여부, 그 자녀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임.

부 또는 모가 체포·구속되어 수용되는 경우,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그대로 방치된 채 충분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녀나 부모 외의 양육자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체포·구속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아동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은 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제출한다.

제66조(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 ①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둔다.

(제2항 생략)

③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 제53조의2의 미성년 자녀 보호 조치 조항은 ①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적용되고, 구속 이전 체포단계⁴⁾인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②교도소장이 신입 수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수용자가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구속 외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고, ②수사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법안에 대해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도록 규정⁵⁾하고 있고,

4)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제200조의3), 현행범 체포(제212조)

5)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수사 실무상 경미한 사건 등으로 체포하였으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없이 단순 조사후 석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⁶⁾ 이미 피의자가 석방된 경우에까지 체포 당시 확인 결과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피의자의 체포 후 48시간 이내 석방 등 수사기관의 보호조치 의뢰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함께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48

6)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 총 135,424명 중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한 피의자는 총 97,699명(72.1%)으로, 상당수는 피의자 조사 후 신속히 석방되고 있음.